

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15 - 56
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5. 6.

제출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용강동주민센터 이전에 따른 소재지를 변경하고, 마포로1구역5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 내 2개의 행정동(아현동, 염리동)을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조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용강동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소재지 변경

- 토정로27길 14 → 토정로31길 31

나. 아현동과 염리동의 법정동 관할 지역을 조정

	현 행	개 정 안
아현동	아현동, 공덕동 중 <u>공덕동장</u> <u>관할지역을 제외</u> (이하 생략)	아현동, 공덕동 중 <u>공덕동장과</u> <u>염리동장 관할지역을 제외</u> (이 하 생략)
염리동	<신 설>	<u>공덕동 중 공덕파크자이를 포함</u>

4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(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 등
의 명칭과 구역)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규제여부 : 제외 법령
- 마. 기타사항
 - 1) 입법예고 : 2015. 6. 4. ~ 2015. 6. 11.(제출된 의견 없음)
 - 2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: 제외 법령
 - 3) 가정복지과의 성별영향평가 : 제외 법령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**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
일부개정조례안**

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“별표””를 “별표”로 한다.

별표 중 동주민센터의 아현동, 용강동, 염리동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구분	동주민센터 (명칭)	동주민센터 소재지	법 정 동 관 할	
			전지역 관할	일부지역 관할
마포구	아현동	마포대로7길 18 (공덕동)		아현동, 공덕동 중 공덕동장과 염리동장 관할지역을 제외한 지역 및 염리동 중 150-2호, 동 151번지 지역
	용강동	토정로31길 31 (용강동)	용강동 토정동	도화동 중 공덕동장과 도화동장이 관할하는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과 마포동 중 도화동장이 관할하는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 및 대홍동 중 대홍동 801-63도로를 기점으로 동 328-2 도로(동막길), 동485-6에 이르는 남서지역, 염리동중 동164-3호도로(동막길)이남 지역
	염리동	승문길 14 (염리동)		염리동 중 아현동장, 용강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역 및 공덕동 중 공덕파크자이를 포함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별표의 개정규정 중 용강동주민센터 소재지 변경은 2015년 3월 30일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			개 정 안				
구 분	동주민 센터 (명칭)	동주민 센터 소재지	법정동관할		동주민 센터 (명칭)	동주민 센터 소재지	법정동관할	
			전지역 관할	일부지역 관할			전지역 관할	일부지역 관할
마 포 구	아현동	(생략)		아현동, 공덕동 중 <u>공덕동장 관 할지역을 제외</u> 한 지역 및 염 리동 중 150-2 호, 동 151번지 지역	아현동 (현행과 같음)		아현동, 공덕동 중 <u>공덕동장과 염리동장 관할</u> <u>지역을 제외한</u> 지역 및 염리동 중 150-2호, 동 151번지 지역	
	용강동	<u>토정로 27길 14 (용강동)</u>	(생 략)			용강동 (현행과 같음)		
	염리동	(생략)		염리동 중 아현 동장, 용강동장 관할구역을 제 외한 전역 <신 설>	염리동 (현행과 같음)		염리동 중 아현 동장, 용강동장 관할구역을 제 외한 전역 및 <u>공덕동 중 공덕 파크자이를 포함</u>	

[별표]

동주민센터 설치,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(제2조 관련)

[별표]

동주민센터 설치,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(제2조 관련)